

검 토 보 고

1997. 3. 14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 : 1997년 3월 6일

○ 회 부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전면개정 ('96.7.1) 과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('96.2.13) 에 따라

- 일부조항을 정비하고, 기금위원회 및 기금운용관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에 따른 기금관련조항 정비

- 기관단체,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, 기타재산 → 삭제

-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 →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

○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명변경과

도 설치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위원회 직명변경

<조례 제5조> - 위 원 장 : 부 지 사 → 사회복지국장

- 부 위원장 : 기획관리실장 → 가정복지과장

- 위 원 : 가정복지국장 → 사회복지과장

<조례 제13조> - 가정복지국장 → 가정복지과장

- 노인복지계장 → 가정복지계장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은

-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 ('96.7.1) 에 따라
 - 노인복지기금 적립기금중
기관단체,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, 기타재산을 삭제하고
 -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금중
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을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 개정하며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('96.2.13) 에 따라
 -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및 기금운용관의 직명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